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案 番 號	183
-----------	-----

提出年月日：1993. 7. 10.  
提出者：尹泰鳳議員外8人

**1. 主 文**

地方自治法 第50條 第2項 및 우리區議會委員會條例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동 條例 第5條에 의해 委員의 選任은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된 議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함.

**2.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제118조 및 우리區議會 會議規則 第60條에 의하여 永登浦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함.

**永登浦區廳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의안 번호	177
----------	-----

발의년월일：1993. 7. 12.  
발 의 자：배기한의원의외8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대상
- (1) 구청장
  - (2) 부구청장
  - (3) 총무국장
  - (4) 재무국장
  - (5) 시민국장
  - (6) 도시정비국장
  - (7) 건설국장
  - (8) 보건소장

(9) 각 동장(서영동 1~22)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 목적**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

**2. 관계 공무원 출석 일시**

- 가. 일 시：'93. 7. 21(수) 14：00 (1일간)
- 나. 장 소：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 다. 출석 대상 공무원
  - (1) 구청장
  - (2) 부구청장
  - (3) 총무국장
  - (4) 재무국장
  - (5) 시민국장
  - (6) 도시정비국장
  - (7) 건설국장
  - (8) 보건소장
  - (9) 각 동장(서영동 1~22)

**3. 구정질문 범위**

가. 구정업무 전반